

310.127  
76747  
51989

# 1987년 국부통계조사실시개요

1990. 4.

B8164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차 례

I. 總 括 .....	3
II. 家計資産部門 .....	11
III. 政府資産部門 .....	17
IV. 法人資産部門 .....	40
V. 個人企業資産部門 .....	54

# I. 總 括

調査統計局 事務官 韓성희

## 1. 序 言

調査統計局 등 6 個機關이 共同으로 1987.12.31 基準 第 3 回 國富統計調査를 1987 ~ 1989 年에 걸쳐 實施하였다.

國富統計調査는 國民經濟의 基礎가 되는 富의 存在量을 把握함으로써 그 간의 經濟開發成果를 測定하고 각종 經濟政策立案에 필요한 基礎資料提供과 國民所得과의 關係를 糾明하여 資本係數를 算出하는데 目的이 있다.

특히 제 3 회 國富統計調査는 5 대 國民計定の 하나인 國民貸借對照表의 作成을 가능케하여 國民計定の 統合編制에 기여함은 물론, 제 7 차 5 개년 經濟社會發展計劃(1992 ~ 1996)에 必要的 資料를 提供해 주는데 그 意義가 있다.

## 2. 調査概要

### 가. 國富의 概念

國富를 넓은 意味로 정의하면 一定時點에서 한 國家가 所有하고 있는 모든 資産의 總合을 現時點의 市場價格으로 評價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意味의 國富에는 有形資産, 無形資産, 對外純資産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 모든 資産을 經濟적으로 評價할 경우 現實적으로 많은 問題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國富를 國民經濟內에 存在하는 再生産 可能 有形資産(固定資産과 在庫資産)과 對外 純資産으로 限定하여 調査하고 있다.

여기서 再生産可能 有形資産이란, 經濟活動의 成果이며, 동시에 生産을 위하여 사용된 有形資産을 意味하므로 土地, 森林, 天然資源, 文化財등은 除外된다.

#### 나. 調查沿革

國富統計의 기원은 17 C 말 英國의 윌리엄 페티(W. Petty)가 1679년의 英國 國富를 推計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이후 스페인, 濠洲,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國富推計가 發展되었고 1920 ~ 1930 년대에 이르러 各國에서 國民所得推計와 함께 國富調查가 普及되었다. 우리나라의 國富統計調查는 第1, 2次 經濟開發 5개년計劃을 樹立·施行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資本 存在量(자본스톡)에 관한 資料가 不充分한데 대해 많은 隘路를 느껴왔다. 이에 따라 제 3차 5個年計劃(1972 ~ 1976) 樹立을 위한 基礎資料 提供을 위하여 1966년부터 國富統計調查 實施 方案에 대하여 論議하여 1968년말 基準時點으로 제 1회 調查를 實施하기에 이르렀다.

第1회 調查에서는 調查統計局을 비롯하여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 中小企業銀行의 4個 機關이 總括 및 家計部門, 政府部門, 法人部門 및 個人企業部門을 분담 實施하였으나, 第2회 調查(1977년말 기준)부터는 個人企業部門의 調查對象規模가 방대하여 農林水産部, 國民銀行을 추가로 參與시켜 6개기관이 共同으로 調查하였으며, 第3회 調查(1987년말 기준)에서도 2회 調查와 마찬가지로 6개기관이 共同實施하였다.

#### 다. 調查對象의 範圍

조사대상 客體는 국내에 소재(거주)하는 中央政府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非營利團體, 法人 및 個人企業, 非法人團體, 一般家口 등이 保有하고 있는 有形固定資産과 在庫資産 그리고 對外純資産으로 나눌 수 있다.



有形固定資産은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선박, 차량 및 운반구, 공구와 가구비품, 건설가계정, 大動植物, 家計資産이며, 在庫資産은 商品 및 製品, 반제품 및 在工品, 原材料, 貯藏品 등이다.

#### 라. 調査方法

國富統計에서 採擇하고 있는 調査方法是 다음과 같다.

- 1) 所有者主義와 使用者主義 並用
- 2) 全數調査와 標本調査 並用
- 3) 自計式과 他計式 並用

#### 마. 評價方法

##### 1) 有形固定資産

有形固定資産의 評價는 取得時期, 取得價格을 調査하여 取得時期로부터 調査時點까지의 物價배율을 적용 總資産額을 구하고 殘價率을 적용 純資産額을 算出하는 取得原價法을 使用하였다.

- 總資産額 = 取得價格 × 物價倍率
- 純資産額 = 總資産額 × 殘價率

##### 2) 在庫資産

在庫資産은 調査時點 현재 製造原價 또는 買入原價에 附帶費用을 加算한 金額으로 評價하였다.

### 3. 第3回 國富統計調査 結果

'87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國富의 總資産額은 539조 8,822 억원이며, 純資産額은 301조 2,100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77년의 62조 8,900 억원과 比較하면, 經常價格으로 8.6 배, 不變價格으로 3.1 배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年平均 增加率은 經常價格으로 24.0 %, 不變價格으로 12.0 % 증가하였다.

한편 總資產額을 '87년 GNP와 比較하여 보면 國富가 GNN의 5.1 배로 나타났다.

### 國富總資產額과 國民計定과의 比較

(단위 : 10 억원, %)

區 分	'77 年	'87 年	增 加 率			
			經 常 (배)	不 變 <sup>1)</sup> (배)	年 平 均	
					經 常	不 變
資 本 總 額	62,890	539,882	8.6	3.1	24.0	12.0
國 民 總 生 產 (배)	17,807 3.5	105,630 5.1	5.9	2.8	19.4	10.8

주 : 1) GNP Deflator 이용

#### 4. 調查上 問題點 및 改善方案

가. 調查機構의 設置 및 運營

〈現 況〉

一 調查機構 設置

調查統計局內에 調查本部를 設置하고 共同實施 機關에는 調查 支部를 設置

－ 運 營

調査本部에 實務者會를 設置하고 그 構成員은 各 支部 조사역급으로 構成하였으며, 實務者會에서는 各 部門別 業務가 統一的 基準下에 推進되도록 諸般事項을 綜合 檢討 調整토록 되어 있음.

< 問 題 點 >

- － 實務者會 構成員이 各 銀行의 고유업무 및 國富調査 支部業務를 兼任하고 있어 調査本部 業務에 專念할 수 없었음.

< 改善方案 >

- － 各 支部에서 차출된 要員은 各 機關의 固有業務를 兼任할 수 없도록 調査本部에 常駐시켜 調査本部 業務에만 專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豫算의 確保

< 現 況 >

國富調査에 所要되는 일체의 豫算은 各 支部에서 自體 確保토록 되어 있음.

< 問題點 >

- － 第3回 調査는 1988年 올림픽 開催 關係로 實施與否가 未確定 狀態에 있다가 1986년말에 同 調査를 實施기로 決定함에 따라 政府 機關은 調査準備 年度인 1987년 豫算을 전혀 確保치 못하였고, 일부 銀行의 경우 本調査에 投入되는 調査費로 인한 銀行 營業利益의 減少를 우려한 나머지 業務推進에 隘路가 있었음.

〈改善方案〉

- 一 國富調査에 所要되는 豫算을 全額 調査統計局에서 確保하는 方案
- 一 資料의 直接利用 與否등을 감안 共同實施機關의 縮小

다. 試驗調査

〈現 況〉

各 機關이 1~2 회에 걸쳐 試驗調査를 實施

〈問 題 點〉

- 一 本 調査의 複雜性, 難易性 때문에 調査機構를 本調査 2~3 年前에 設置하고 試驗調査를 4~5 回 程度 實施, 實地調査에서 發生하는 諸般 問題點을 事전에 防止하여야 할 것임.

라. 各種 評價基準表

〈現 況〉

評價基準表는 各 機關의 固有業務와 關係가 있는 機關에서 作成

評價基準表의 種類	作 成 機 關	備 考
• 物價倍率表	韓 國 銀 行	1955 年까지만 作成
• 建物評價基準表	〃	4 個種類 19 個 用途別
• 資産分類 및 耐用年數表	韓 國 産 業 銀 行	
• 殘價率表	〃	
• 大動植物 評價基準表	農 林 水 産 部	
• 家財資産 評價基準表	調 査 統 計 局	

가. 建物評價基準表

〈問題點〉

- － 現 分類가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석조, 목조 및 기타등 4個 種類로만 區分하고 있으나, 住宅의 地域的 特性, 構造的 特性에 의한 價格差를 충분히 反映치 못하였음.

〈改善方案〉

- － 評價 專門機關인 韓國鑑定院에서 作成하고 있는 建物 新築單價(住宅 46個로 分類)資料 등을 利用, 現實反映을 높일수 있도록, 細分하여야 할 것임.

나. 內容年數表

〈現 況〉

法人稅法 施行規則 別表인 固定資産 耐用年數表를 適用 作成

〈問題點〉

- － 法人稅法에서 適用하고 있는 耐用年數가 實際 耐用年數보다 다소 짧아 資産額 評價時 低評價되고 있음.

〈改善方案〉

- － 資産은 種類가 數없이 많으므로 耐用年數表 作成에는 專門的知識 습득 및 長期間에 걸쳐 資料를 蒐集, 現實에 맞게 耐用年數表를 作成하여야 함.

다. 資料處理

〈現 況〉

各 支部調査 資料는 自體機關에서 集計토록하고 調査統計局에서는 이를 聚合 全國值를 集計토록 함.

< 問題點 >

- 各 機關이 各各 다른 種類의 電算機器의 保有, 保有機種의 容量차이, 擔當者의 人事移動 등으로 6個機關 資料 聚合期間이 計劃보다 長期間 所要

< 改善方案 >

- 擔當者의 人事移動의 抑制 電算擔當者의 隨時 討議, 調查表 設計時 부터의 電算擔當者의 參與등으로 資料處理期間의 短縮이 있어야겠음.

## Ⅱ. 家 計 資 産

### 1. 調査概要

#### 가. 調査對象 資産의 範圍

- 住 宅
- 家財資産  
調査對象除外 資産
  - 事業用 資産
  - 애완용동물 및 관상수
  - 藝術品, 골동품 및 書籍
  - 身體補助用機構 (안경, 보청기)
  - 住宅의 준고정 附着物
  - 耐用年數가 1年未滿인 消費財

#### 나. 評價方法

- 耐 久 財  
$$\text{總資産額} = \text{保有數量} \times \text{單 價}$$
$$\text{純資産額} = \text{總資産額} \times \text{殘價率}$$
- 準耐久財  
$$\text{總資産額} = \text{保有數量} \times \text{單 價}$$
$$\text{純資産額} = \text{總資産額} \times 0.5$$
- 住 宅  
$$\text{總資産額} = \text{總 建 坪} \times \text{單 價}$$
$$\text{純資産額} = \text{總資産額} \times \text{殘價率}$$

다. 家計資産 規模

(단위 : 10 억원 )

	總 資 産 額		增加率 (%)	構 成 比	
	1977	1987		1977	1987
— 國 富 總 額	62,744	539,882	8.6	100.0	100.0
— 家 計 資 産	23,370	168,018	7.2	37.2	31.1
• 住 宅	12,862	83,011	6.5	20.5	15.4
• 家 財	10,508	85,007	8.1	16.7	15.7
耐 具 財	(4,090)	(40,722)	(10.0)	(6.5)	(7.5)
準耐具財	(6,418)	(44,285)	(6.9)	(10.2)	(8.2)

2. 調査上 問題點 및 改善方案

가. 分類體系

<現 況>

- 내구재, 준내구재의 分類는 UN의 BEC分類體系에 따라 分類
- 가 재
  - 내 구 재 = 耐用年數가 3年以上이고 비교적 高價인 것
  - 준내구재 = 耐用年數가 1年以上 3年未滿이고 비교적 低價인 것.

<問 題 點>

- UN의 내구재, 준내구재 分類는 耐用年數 및 價格에 의하여 區分하였으나, 品目別 耐用年數가 具體的으로 提示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價格基準도 低價 및 高價로 되어 있어 擔當者의 주관에 따라 同一 品目の 分類가 달라질 수 있음.



〈改善方案〉

- － 내구재, 준내구재의 分類는 各國의 生活風習에 따라 달리 分類하고 있어 이에 대한 깊이있는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調査品目 選定

〈現 況〉

被調査者の 應答負擔 輕減 및 調査의 便宜性을 감안하여 291 個品目 (總 755 個 規格)으로 縮小

〈問題點〉

- － 現在 家口에서 所有하고 있는 내구재, 준내구재를 品目別, 規格別로 分類時 約 100 萬種으로 推定(미도파의 경우 約 80 萬個 取扱)되는 것을 291 個 代表 品目으로 縮小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음.

〈改善方案〉

- － 短期間에는 不可能하고 2~3 年間に 걸쳐 製造會社에서 生産量 單價에 관한 資料를 蒐集, 이를 檢討, 調査品目を 選定하여야 할 것임.

다. 品目別 單價資料

〈現 況〉

全國 市·道廳 所在地(11 個市)에서 品目別 販賣價格 資料를 蒐集 이를 單純 平均하여 單價 資料算出

〈問題點〉

- － 大都市에서만 價格資料를 蒐集함으로써 대부분이 大企業體製品을 選定 調査하여 비교적 高價의 製品이 調査된 反面 中小都市 및 郡部市場이 調査에서 除外됨에 따라 비교적 低價인 中小製造業體 製品의 價格이 反映되지 않고 있어 資産評價時 다소 높게 推計됨.

〈改善方案〉

- 一 品目別 價格資料 蒐集地域을 大都市, 中小都市, 郡廳所在地까지 擴大 調査하고 이를 大都市, 中小都市, 郡部家口數를 基準으로 加중평균하여 單一 價格을 算出하거나 市·道別 資料를 算出 利用함으로써 現實 反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라. 耐用年數表

〈現 況〉

品目別 耐用年數는 過去資料와의 시계열유지를 위하여 第2回 調査時와 同一하게 適用

- 木材家具類 : 10年
- 철재가구류 : 15年
- 電氣製品 : 8年
- 카 메 라 : 7年
- 피 아 노 : 10年
- 기 타 악 기 : 7年
- 손목시계 : 10年

〈問題點〉

- 一 高價인 피아노, 카메라의 耐用年數가 各各 10年, 7年으로 되어 있으나, 家口에서는 이보다 實際 長期間 使用하고 있으며, 손목시계의 경우 과거 태엽식에서 電子式으로 變하여 故障時 修理가 容易치 못하여 耐用年數 10년이 긴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同一 品目이라도 品質의 차이에 따라 使用期間의 差異가 있음.

〈改善方案〉

- 一 同一商品이라도 高·低價 品質의 差異를 두어 耐用年數를 달리 適用(例: 손목시계의 경우 수은전지의 交替可能, 不可能 등)하고 試

驗調查時 使用年數 資料를 蒐集 이를 基礎로 耐用年數表를 作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 試驗調查

##### 〈現 況〉

2 회에 ( 1 회當 300 家口 調査 ) 걸쳐 試驗調查 實施

##### 〈問 題 點〉

- 調査의 難易性을 감안할때 2 회의 試驗調査는 不足한 實情이었음.
- 品目別 取得時期 ( 年度別 ), 取得價格의 調査는 不可能하였음.
- 家口當 調査時間이 3 時間 以上 所要되는 家口에서는 應答時間이 30~40分 經過後에는 正確한 應答이 不可能하였음.

##### 〈改善方案〉

- 1 時間 以內에 應答이 可能토록 品目別 縮小 調整
- 取得價格調査의 廢止 및 取得年度를 '87, '86, '85, '84 ~ '83, '82 ~ '78, '77 年 以前 등 6 個 區間으로 區分, 調査 所要時間을 최대한 短縮하여 正確한 應答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
- 調査表에 調査品目を 印刷 ( 2 回調査時에는 調査員이 質問하여 빈 調査表에 記載 ) 調査品目の 漏落 記載誤記의 防止 및 調査時間의 短縮效果를 가져왔음.

#### 바. 標本設計

##### 〈現 況〉

調査統計局에서 家口를 對象으로 調査하는 多目的 標本調査區 利用調査

〈問題點〉

本調査는 財産狀態 調査임으로 다소의 偏倚가 있을 것임.

〈改善方案〉

財産稅 賦課資料 등을 利用하여 國富調査를 위한 別途의 標本을 設計 利用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實地調査

- 國民意識水準 向上, 個人資産의 露出忌避 등으로 調査에 不應하는 事例가 發生, 특히 2個 調査區에서는 集團的으로 本 調査를 拒否 하고 있어 그 理由인즉 第2次 大戰末에 軍需物資 生産에 必要한 原材料 供給을 目的으로 金屬製品에 대한 保有調査를 實施한 후 強制 懲發당한 被害意識이 아직도 潛在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判明되었음.

아. 實地調査 時期

〈現 況〉

1988. 6. 1 ~ 6.30 日에 調査

〈問題點〉

- 基準時點인 '87.12.31 日부터 6個月間의 時差로 인하여 그간의 結婚, 分家로 新生家口の 發生 및 그간의 物品購入, 交替, 破損 등으로 調査에 混亂 招來

〈改善方案〉

- 基準時點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時期에 實施함으로서 이러한 問題를 解消할 수 있을 것임.

### Ⅲ. 정부 자산 부문

韓國銀行 調査役 박현덕

#### 1. 政府資産調査 概要

한국은행은 제 1, 2회 국부조사에 이어 금번 제 3회 국부조사에서도 정부부문의 자산을 조사하였는바, 그결과를 보면 1987년말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문 자산규모는 총자산액 기준으로 46조 7,030억원에 달하여 1977년말의 규모에 비하여 5.4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부총규모 539조 8,822억원의 8.7%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部門 資産規模

(단위 : 10억원, %)

	총 자산액		증가율(배)	구 성 비	
	1977년	1987년		1977년	1987년
국 부 총 액	62,744	539,882	8.6	100.0	100.0
정 부 부 문	8,622	46,703	5.4	13.7	8.7
* 조사기관수	14,881	24,631	1.6		

政府部門 資産形態別 總資産額

(單位 : 10 億圓)

資 産 分 類	1977(A)		1987(B)		B/A (倍)
	額	構成比(%)	額	構成比(%)	
總 額	8,622.0	100.0	46,703.0	100.0	5.4
1. 有 形 固 定 資 産	7,642.4	88.6	44,651.9	95.6	5.8
10. 建 物	1,604.8	18.6	9,358.0	20.0	5.8
11. 構 築 物	4,600.8	53.4	29,958.7	64.1	6.5
12. 機 械 및 裝 置	582.9	6.8	1,106.2	2.4	1.9
13. 舶 舶	42.9	0.5	262.2	0.6	6.1
14. 車 輛 運 搬 具	461.7	5.4	2,123.4	4.5	4.6
15. 工 具 와 器 具, 備 品	220.4	2.5	870.7	1.9	4.0
16. 建 設 假 計 定	120.6	1.3	933.7	2.0	7.7
17. 大 動 植 物	8.3	0.1	38.9	0.1	4.7
2. 在 庫 資 産	979.6	11.4	2,051.0	4.4	2.1

## 2. 調査上 問題點 및 改善方案

### 가. 試驗調查

#### 1) 일반적 사항

가) 강습일수 단축 및 강습공무원의 여비지급

#### <現況>

試驗調查에서는 강습일수를 제 2 회 調査시의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였고 수강공무원에게 당행 부담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 바 수강공무원중 일부만이 출장으로, 대부분은 외출 또는 교육으로 근휴처리하고 강습에 참가하였다.

#### <問題點>

本調査시 원격지 기관의 강습참가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었다.

#### <改善內容>

당행 여비규정상 수강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本調査시에는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하여 국무총리 명의의 조사협조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 적극적인 강습을 유도하는 한편 강습장소 선정에 있어서 조사대상기관의 거리 및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당행 지점뿐만아니라 주재사무소 소재지에서도 강습을 하였으며 실사지도에서도 원격지기관의 방문을 우선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강습출석률은 90%수준을 넘었으며 최종 조사표회수율에 있어서도 98%수준에 육박하였다.

나) 조사단위의 일률화에 따른 조사량의 불균형

#### <現況>

조사방법을 기본적으로 財産臺帳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財産管理 所屬官署( 2 회시보관청 ) 등 중간급기관( 이를 調査表作成總括機關이라함 )이 강습에

참석, 당해기관 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자산상태도 조사하게 하였다.

<問題點>

일부 조사표작성총괄기관에서는 조사량이 엄청나다는 이유로 산하기관의 재산관리담당자를 소집, 자체강습한 후 조사표작성을 맡기는 사례가 있었으며(본 조사시에도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나타났음) 이에 따라 강습이 불충실하거나 조사기재요령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경우에는 부실기재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산하기관이 많은 일부 公共團體의 경우 조사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	<u>조사표작성총괄기관</u>	<u>산하기관</u>
	지방체신청	우체국
	지방철도청	역
	교육청	학교

<改善內容>

이는 산하기관이 다종다양하며 그 규모 및 수가 불균등하다는 정부조직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나 조사단위를 차하급기관(산하기관)까지 확대하는 경우 강습 및 실사지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어 당행 조사인원 및 시간·예산의 제약으로 이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부 地方自治團體의 산하기관(예:시청의 경우 구청 및 사업소)에 대해서만 강습을 확대하였으며 기타 조사대상기관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사지도를 겸한 사후강습을 하였다. 또한 산하기관수가 방대한 농협, 새마을 금고연합회, 의료보험조합연합회등 일부 公共團體에 대하여는 단위조합에 대한 標本調査와 자체 전산자료의 이용을 병행하였다.

다) 公共團體에서의 부실기재

〈現況 및 問題點〉

公共團體는 기능적 측면에서 대체로 정부기관과 유사하지만 그 소유자산이 법률상 國公有財産 또는 물품이 아니므로 재산대장의 기재양식, 자산의 관리방식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관리체계등이 정부기관과는 같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試驗調查에서는 2회 조사에서와 같이 公共團體의 자산을 國公有財産조사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사하였는바, 정부자산과 함께 설명한 조사요령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산의 누락 등 부실기재가 발견되었다.

〈改善內容〉

조사방법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公共團體調查表를 별도로 할 수 없었으며 그 대신 조사표작성요령서에 公共團體 조사부문을 명확히 기술하는 한편 조사표에도 국공유재산종류, 회계·기금분류등 公共團體에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별도 표시를 하는등 혼동을 피하고 조사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외에 강습시 이를 주지시켰다.

라) 일부자산의 조사시기 조정

〈現況〉

1987년도의 試驗調查는 7월에 社會間接資本, 9월에 國公有財産, 10월에 物品資産 순으로 실시하였다.

〈問題點〉

1987년 7월중에 실시한 도로, 하천시설등 일부 社會間接資本조사는 조사기간중 발생한 대규모의 수해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수해대책본부에 파견근무를 하거나 수해 발생현장의 복구작업에 동원되어 조사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며 11월중에 실시된 보완조사에서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내무부의 산하 공무원들의 잦은 외근으로 조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改善內容〉

本調査에서는 국회의원선거, 올림픽경기등의 국가적 행사가 실시되는 점에 유의하여 실사에 의존하는 國公有財産등의 조사는 올림픽 개최전인 1988.4-7월에 실시하고 올림픽경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기존자료를 이용, 간접추계가 가능한 物品資産을 조사하였으며, 社會間接資本조사는 풍수해 빈발기간인 하절기를 피해 1988.10-11월중에 실시하는 등 조사시기를 試驗調査와는 다른 순서로 조정, 차질없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표에 관한 사항

가) 國公有財産

(1) 耐用年數

〈現況 및 問題點〉

總資産額의 산출에 必要한 耐用年數 자료의 현실화를 위해 기관 자체에서 설정한 자산별 耐用年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했으나 대부분 기재하지 않았다.

〈改善內容〉

이는 정부기관에서 기업회계에서와 같은 엄정한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耐用年數를 산정할 현실적 必要性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本 調査에서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작성한 자산분류 및 耐用年數表에서 정하고 있는 耐用年數를 일률 적용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동표에서 정한

耐用年數가 법인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정부자산의 평가에는 불합리하거나 자체耐用年數와 차이가 심한 경우에 한해 정부기관의 자체耐用年數를 사용하였다.

예) 저수지(35→60년), 해운항만청 하역설비(6→15년), 시군의 헬리콥터(2→4년), 공공단체의 일부 기계장치(10→30년)

## (2) 取得價格

### 一 일반적인 사항

#### 〈現況 및 問題點〉

취득년도가 오래된 자산(특히 건물)중에는 6.25 동란, 화폐개혁 등의 사회, 경제적 변동으로 장부상의 取得價格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정부의 기구개편에 따른 管理轉換, 使用轉換 등으로 관리대장이 새로이 작성되거나 이기되는 과정에서 取得價格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 〈改善內容〉

取得價格이 기재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取得價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은 建物評價基準表에 의해, 구축물, 기계등 여타 자산은 시가 및 동종자산 평가액 순으로 평가하였다.

### 一 建 物

#### 〈現況 및 問題點〉

건물의 경우에는 取得價格이 건축비용(신축시)인지 구입가격(매도시)인지에 따라 평가기준의 이원화로 인해 동일건물이라도 두 평가액간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구입가격에는 신축당시의 공사비뿐만 아니라

위치, 용도 구분 및 편의시설의 근접성 등에 따른 토지가격이 부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 〈改善內容〉

건물은 일반적으로 耐用年數가 길 뿐만 아니라 소유주가 자주 바뀌어 건축비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구입가격을 평가기준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나 國民貸借對照表에서는 건물과 토지가 별도항목으로 계상<sup>1)</sup>되고 있기 때문에 國富統計결과를 國民貸借對照表 편제에 이용하기 위하여는 건축비용에 의해 건물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능한 동 금액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한편 建物評價基準表는 1987년 말  $m^2$ 당 신축단가이므로 이 표에 의하여 평가된 건물은 모두 건축비용으로 조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資産再評價額

#### 〈現況 및 問題點〉

현행 國有財産法에는 5년마다 國有財産에 대한 가격개정<sup>2)</sup>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산재평가가 모든 정부자산에 대해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자산감정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財産管理擔當者의 주관적 평가가 되기 쉽기 때문에 통계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실제로 재산관리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매각처분시의 처분손을 방지하기 위해

---

1) 건물은 재생산가능 유형자산으로, 토지는 재생산 불가능유형자산으로 계상된다.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함.)

〈改善內容〉

재평가액에 의한 자산평가는 대체로 總資產額이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평가액은 取得價格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건물의 경우는 정당 取得價格 이외에는 예외없이 建物評價基準表에 의해 평가하였다.

(4) 賃借資産

〈現況 및 問題點〉

試驗調査의 조사요령서상의 대여와 임차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아서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산도 조사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으며 賃借資産의 신품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建物の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의 자산평가가 문제되었다.

〈改善內容〉

사용자산은 주로 자본과 생산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본계수의 산출을 위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법적계약에 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자산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賃借資産은 대부분 건물인 바, 당초 신품가격으로 평가하려 했으나 동 신품가격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상당 取得價格으로 평가하였으며 이것이 없을 경우 建物評價基準表로 평가하였고 건물이외 여타자산(주로 컴퓨터)은 取得價格을 파악, 평가

---

2) 재무부의 國有財産 가격개정지침에 따르면 가격개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신품가격에서 감가상각해당액을 차감한 현재의 시가(“복성가격”이라함)로 평가하며 신품가격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달가격”에 의한다.

- 제조달가격 = 취득가격 × 물가배율 → 국부평가의 총자산에 해당
- 복성가격 = 제조달가격 ×  $\frac{\text{耐用年數} - \text{經過年數}}{\text{耐用年數}}$  → 국부평가의 순자산에 해당

하였다. 또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면적에 建物評價基準表上の  $m^2$  당 단가를 곱하여 평가하였다.

#### (5) 現物出資資産

##### <現況 및 問題點>

현물출자한 자산을 貸與資産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의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있었다.

##### <改善內容>

현물출자한 자산은 이전등기에 의해 그 법적 소유권이 출자자로부터 출자 상대방으로 이전되므로 동자산은 출자자의 소유자산이 아니므로 貸與資産으로 보지 않았다.

#### 나) 社會間接資本

##### (1) 道路의 物量資料

##### <現況 및 問題點>

복잡한 도로관리체제로 인해 담당자들조차 행정구역관내의 도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어 일부도로가 중복 또는 누락 기재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특히 도로의 노폭에 관한 자료는 연장에 관한 자료에 비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그 정확도가 뒤떨어져 있었다. 또한 물량자료로서 建設部の ‘道路現況調書’를 이용, 간접조사할 경우 동자료에서는 노폭에 관한 자료가 미비하였다.

##### <改善內容>

도로, 하천시설의 社會間接資本調査는 試驗調査시의 調査方法을 전면 수정하여 대체로 國公有財産調査와 동일하게 전산입력,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방법도 간접조사에서 자계식 직접조사로 전환하고 건설부등의 정부 既存資料는 조사누락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등 참고로만 이용하였다. 따라서 도로에 관한 자료는 조사표를 통해 해당관서로부터 직접 파악했으며 건설부 도로국 도로계획과의 차선별 평균 노폭자료도 참고로 이용하였다.

## (2) 道路附屬施設の 物量資料

### <現況 및 問題點>

교량, 터널, 고가도로, 육교 및 지하도는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소관 과(계)에서 그 재원에 관해 미리 파악해 놓은 자료가 부족하여 조사표 작성에 애로가 있었다.

### <改善內容>

교량, 터널, 고가도로, 육교, 지하도 등 도로부속시설도 조사표에 따라 당해시설 소유 정부기관에 의하여 파악하였으며 부득이 파악이 곤란한 경우 건설부 도로국의 '全國橋梁現況', '전국터널현황' 등의 자료로 보완하였다. 특히 지하도중 일부는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민방위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 (3) 河川施設の 物量資料

### <現況>

試驗調査에서는 堤防, 護岸, 水門 등 하천시설의 물량자료로서 경기도청 하천과에서 발간한 '既成堤現況調書'를 이용할 수 있어서 조사상 어려움이 없었다.

### <問題點>

관련자료의 수집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일부 도청에서만 동 자료를 발간하고 있고 또한 도청에 따라서 제방, 호안의 경우 연장만 기재되어 있거나, 수문의 경우 구조별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本調査시 하천시설의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 <改善內容>

하천시설도 도로시설과 마찬가지로 조사표에 의한 직접조사를 하였는 바,

상기 문제점과 같은 몇몇 불완전한 조사표에 대하여는 ① 지방의 연장만 기재한 경우 총체적을 기재한 자료로부터 평균단면적을 산출, 이를 연장에 곱해 총체적을 구하며 ② 호안의 연장만 기재한 경우 총면적이 기재된 자료로부터 평균 비탈길이를 산출, 이를 연장에 곱해 총면적을 구했으며, ③ 수문 총개소만 나타난 도의 경우에는 수문 구조별로 구분 기재된 자료에서 구조별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총개소에 곱해 그 구조별 개소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 (4) 道路 및 河川施設의 價格資料

##### < 現況 및 問題點 >

동일구조의 공사라도 각 공사시행청의 공사평균단가가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 이로부터 산출된 평균단가자료의 신빙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 < 改善內容 >

본 조사에는 도로 및 하천시설에 대한 단가자료를 건설부, 국토관리청, 도청등 각 공사 시행청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파악한 후, 이 중 평균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금액을 제외한 후 평균단가를 산출하였으며 그의 건설부, 한국도로공사,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정부자료도 아울러 참고하여 최종 단가자료로 확정, 이를 자산평가자료로 사용하였다.

#### 다) 物 品

##### (1) 物品分類의 不充分

##### < 現 況 >

物品資産의 試驗調査에서는 물품분류체계 (군-급-품명식별번호) 상 군을

단위로 조사하여 이를 국부자산 분류표상의 자산소분류에 대응시키고 물품 보유기관으로 부터 조사된 물품 군별 취득년도를 파악한 후 이에 따른 물가배율과 잔가율을 적용하여 군별로 대응된 자산분류별 總資産額과 순자산액을 평가하였다.

<問題點>

물품의 군별 대응과정에서 국부자산분류에 완전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추계액의 정확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 예) : 제 22 군 철도장비에는 철도차량, 동 구성물 및 부속물, 철도자재 등이 포함되나 대중을 이루는 철도차량에 따라 제 22 군을 궤도차량으로 일괄 분류하였다. }

<改善內容>

본조사에서는 이러한 분류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단위를 물품분류체계의 급단위까지 세분 조사하여 자산분류의 정도를 제고하였다.

(2) 一部機關 物品管理臺帳의 取得年度 不明

<現況 및 問題點>

정부기구개편이나 대장의 이월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부기관의 물품관리대장에는 取得年度가 전혀 기재되지 않아 조사가 어려웠다.

<改善內容>

이는 정부기관의 물품관리실무에서 해당물품의 활용, 불용여부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取得年度가 별로 의미있는 자료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調査에서는 표본조사대상기관선정시 기관의 물품대장현황등을 사전에 把握하여 가능한 이와 같은 기관이 조사에 包含되지 않도록 유의



하였고, 조사후 取得年度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실사지도,문의 및 유사기관의 동종 물품의 사례과약 등을 통하여 取得價格을 보완하였다.

### (3) 重要物品이 아닌 物品의 資産內譯 不明

#### <現況 및 問題點>

중요물품은 ‘중요물품이력카드’에 취득년도 및 가격, 수리내역 등을 개별 물품별로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나 중요물품이 아닌 물품은 ‘비소모품관리 및 운용카드’에 동일품목의 운영상황(수입, 불출, 재고)을 일괄 기재하고 있어 중요물품이 아닌 물품은 카드사본에 의한 간접조사가 불가능하였다.

#### <改善內容>

本調査시에는 조달청자료의 전산입력사정상 중앙정부는 “物品增加 및 現在額 總計算書”를 이용하고 그 대상을 중요물품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定期財物調査 綜合報告書”를 이용하고 그 대상을 중요물품과 중요물품이외의 물품도 包含 調査하였다. 그리고 標本調査方法도 試驗調査時의 물품관리카드사본 위주에서 조사표 위주로 바꾸고 國公有財産調査와 마찬가지로 기재내용을 해당기관이 직접 작성토록 하였다.

### (4) 耐用年數資料의 未備

#### <現況 및 問題點>

정부의 물품관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의 耐用年數 자료로는 조달청고시 2호(1981.1.15)에 의한 ‘主要物品 耐用期間目錄’이 있는 바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전체 物品資産의 總資産額 평가에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改善內容〉

本調査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개별품목별 耐用年數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품목금액을 가중치로 하여 군별 平均耐用年數를 산출, 순자산액을 구하였다. 따라서 國公有財産調査와 달리 “資産分類 및 耐用年數表”상의 자산별 耐用年數를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였다.

나. 本調査

1) 一般的 事項

가) 調査客體區分, 資産分類, 産業分類上的 問題

〈現況〉

이번 3 회조사의 조사객체 구분 및 자산, 산업분류 등 전반적인 조사방법은 대체로 2회 조사를 따랐다. 즉 조사객체의 구분은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법인(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기업(비영리단체 포함) 및 일반가구로 구분하고 조사실시기관도 대체로 이 구분에 따랐다. 자산분류는 주로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분류를 하였으며, 산업분류는 대체로 UN의 國際標準産業分類를 근간으로 한 韓國標準産業分類(KSIC)에 따랐다.

〈問題點〉

2회 조사는 우리나라의 國民所得統計가 신국민계정(SNA)으로 이행되기 전에 편제된 것이다. 國富統計는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지만 이를 토대로 國民貸借對照表를 작성, 궁극적으로 5대國民計定의 통합, 편제를 가능케 하려면 國富統計 또한 국민경제의 여타 통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新國民計定에 따라 편제해야 할 것이다.

### 〈改善方案〉

國富統計가 SNA를 따를 경우 경제주체분류는 제도부문분류에 따르는 것이 要望되므로 현재의 제도부문 분류를 보다 正確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자산분류도 현재의 법인세법에 따른 것과 SNA와는 다르나 SNA에서의 總固定資本形成의 자본재형태별 분류가 너무 단순(현재 7가지로 분류)한 바, 조사상의 편의와 고정자본스톡표 작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세분된 현행 분류방식이 좋겠다. 다만 현재 조사되지 않은 총자본형성에서의 토지조성 및 개량에 대한 지침<sup>1)</sup>을 명확히 내려야 할 것이다. 산업분류도 원칙적으로 현행 KSIC에 따르되, SNA에서 경제활동별 분류를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등으로 대별하고 각각을 세분하듯이, 현재의 모든 소유주체를 1-9의 산업대분류로 구분하는 자의성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 나) 政府資料의 綜合 電算網 構築

#### 〈現 況〉

정부부문의 조사는 정부재산관리체계에 따라 國公有財產, 物品, 社會間接資本 및 對外純資產으로 구분, 國公有財產은 國公有財產대장을 보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조사표를 작성했으며 물품은 기본적으로 조달청 자료를 이용, 간접조사를 하였으며 社會間接資本은 건설부, 도청자료를 參考하되 원칙적으로 조사표에 의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고 對外純資產은 당행등의 既存資料

---

1) SNA에 따르면 기중의 토지조성 및 개량은 토지등의 재생산 불가능유형고정자산을 추계할 경우에는 기말의 토지에 포함 계상되므로 재생산 가능유형자산조사시 별도조사는 필요없게 된다.

를 이용하여 간접조사하였다.

#### 〈問題點〉

정부에서는 國有財産法에 의거 매년 國有財産의 변동상황을 파악, 조사하여 “國有財産增加 및 現在額 總計算書”를 작성, 발간하고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유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物品, 社會間接資本에 대하여도 상기와 같은 상세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국부조사에 이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부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개별자산별 取得年度와 取得價格이 조사되어 있지 않아 동 정부자료를 이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동일 정부재산에 대하여 별도 조사표를 공무원이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담당공무원이 업무상으로 바빠 조사표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조사의 정도에 문제가 있다 하겠다.

#### 〈解決方案〉

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부자료에 대하여 電算網을 구축, 이를 통하여 각종 자료를 정리, 집계할 計劃으로 있는 바, 차제에 국부조사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정부 이외의 기관에서도 편리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내무부의 토지자료의 전산화와 함께 재무부, 조달청, 건설부 등 國富統計調査와 密接한 관련이 있는 정부부서에서 당해자료를 전산화할 때 각 자산별 取得年度와 取得價格등을 입력한다면 정부부문의 국부조사는 그런 전산자료를 이용, 몇가지 전산작업을 통하여 비교적 손쉽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조사상의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2) 調査方法

### 가) 標本調査方法 導入

#### 〈現 況〉

이번 정부자산 조사는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를 포함하여 약 25,000 개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였다.

#### 〈問題點〉

전수조사에 따라 당행이 처리할 조사업무량이 방대할 뿐 아니라, 조사표 작성총괄기관(이번 조사의 경우 1,615 개)인 중간급기관의 조사표작성등의 업무도 과중하여 당행 직원이 수회의 실사지도를 하고 조사요령강습도 전국적으로 수차례 걸쳐 실시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었다.

#### 〈改善方案〉

정부자산은 조직의 특성상 기관 상호간 자산보유액 및 소유자산 구성 현황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예산의 제한 때문에 매년의 자산보유 현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즉, 여타 국부조사지부인 법인이나 개인기업보다는 기관간 자산보유 상황의 균질성이 더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정부기관의 특성에 따라 몇가지 층화를 하여 표본설계를 잘 한다면 적은 노력과 짧은 시간으로도 전수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과 각급학교는 소유자산현황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標本調査가 적절하다 하겠다.

## 나) 電算資料에 의한 調査

### <現 況>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해 정부자산이 크게 증대함에 따라서 조사의 效率상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일부정부기업 및 공공단체의 조사에서는 해당기관의 전산입력자료를 활용하였다. 즉, 철도청, 농지개량조합(수리시설물), 농협, 수협, 서울대병원등의 소유자산은 당행의 조사표대신 당해기관의 전산자료를 수령, 몇가지 조정을 한 후 바로 동 자료로써 자산평가를 하였다.

### <問題點>

해당기관의 전산자료는 기재내용의 오류 check와 타당성검토가 조사표에 의한 것보다 곤란한 실정이었으며 취득년도, 취득가격뿐 아니라 재평가액도 기록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에 대부분 수량자료가 입력되지 않아 평가기준표나 동종자산 평가액을 활용한 자산평가가 곤란하였다.

### <改善方案>

많은 기관이 자산관리를 전산system에 의하는 추세를 감안, 앞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개별기관의 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당행의 전산system에 맞는지, 기재내용은 타당한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력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군과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수리시설물은 농업진흥공사의 전산자료로써 전면 대체하였고 철도청도 자체 전산자료로 조사를 하였던 바, 이 두자료의 양이 많았으며 입력내용이 본 국부조사와 상이하여 이의 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전산자료로 조사를 대신 할 것인가 결정하고, 그 기재 내용도 면밀히 검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 3) 資産評價

#### 가) 減價償却法의 定額法으로의 轉換

##### <現況>

국부자산평가에 있어서 순자산액은 원칙적으로 總資產額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동 잔가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定率法未償却殘額表’에 의거한 것인 바, 여기서 사용된 정율법은 기업회계의 보수주의 관점에서 耐用年數의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방법이다.

##### <問題點>

국부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總資產額은 생산적 측면을, 純資產額은 재산적 측면을 반영하는데 자본재의 생산능력은 내용연수 기간중 거의 일정하다가 내용연수의 끝에 도달하여서야 급격히 하락하므로 耐用年數의 잔여기간 동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파악되는 특정시점에서의 자본재의 재산가치는 초기에 많이 감소되기보다는 경과년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므로 정율법보다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이 순자산액의 의미를 보다 타당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改善方案>

SNA에서는 고정자본소모계상시 자본재의 마모가 심할 경우에만 정율법을 사용하고 대체로 정액법을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액법에 의해 순자본스톡을 산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향후 조사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법을 채택함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다.

#### 나) 大動植物의 包括範圍

##### <現況>

대동식물의 조사대상범위는 農林水産部の 大動植物評價基準表 작성시의 분류에 따라 조사의 범위를 정하였다.

##### <問題點>

농림수산부의 대동식물의 범위는 농수산통계에서 포괄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됨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동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동식물일지라도 기준년령 이상의 동식물은 유형고정자산으로, 기준년령 미만의 동식물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동식물의 범위와 여타 국민계정통계인 SNA와 1/0의 대동식물의 포괄범위 및 분류가 상이함으로써 통계간의 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자산분류 항목에 동·식물의 기타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동식물평가기준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동물, 식물이 포함된다.



대 동 식물 범 위 비 교

	농림수산부 (국부조사)	SNA	I / O
動 物	소, 말, 돼지, 면양 토끼, 닭, 사슴, 벌 1) 기타	번식용 가축, 사역용가축, 양모절취를 위한 양, 라마 등	낙농용, 경주용, 양모용 및 기타 자본적 가치를 지니는 가축  (젓소, 말, 면양, 사슴)
植 物	사과, 배, 포도, 뽕나무, 호프, 감귤, 밤, 무화과, 매실, 감, 복숭아, 살구, 자두, 앵두, 양다래, 유자, 기타 1)	대규모 농원, 과수원, 포도원 개발시의 산물이 나올때까지의 식 목에 대한 지출	조림, 과수조성 및 관상식물중 단가 10만원 이상의 대식물

주 : 1)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기타자산은 동물의 경우 언급된 자산 이  
외의 모든 동물을, 식물의 경우 자연림과 인공림을 제외한 모든  
식물을 포함함.

< 개선방안 >

향후 조사시에는 대동식물의 범위와 분류를 정할때 國富統計와 國民計定  
의 여타통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상호 일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동물원의 대다수 관람용 동물등 기타 동물과 가로수가  
대부분인 관상수 등 기타 식물의 조사대상범위를 명확히하여 조사대상과

조사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여 조사상의 혼돈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번 당행의 대동식물의 조사에 있어서는 정부재산대장의 불비로 인한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기타의 동·식물은 모두 제외하였다. 한편 대동식물의 평가에 있어서 總資產額 = 純資產額으로 보는 것보다는 유형고정자산과 동일하게 總資產額은 신품가격으로 가장 비싼 금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대동식물도 가장 비싼 금액(재고자산에서 유형고정자산으로 되는 칫해의 가격 즉, 성원육성가)이 總資產額이 되며 대동식물평가기준표상의 연령별 금액이 잔가율이 고려된 시가로서 純資產額에 해당된다. 또한 농림수산부의 동물분류에는 동물별 耐用年數가 없어 評價基準表가 없을 경우의 순자산액 평가와 평균경과율 등의 산정이 곤란한 바, 이의 명기가 요망된다.

#### 다) 中古品 및 再評價額에 의한 總資產額 評價

##### < 現況 >

자산을 취득할 당시 중고품으로 구입한 자산일 경우와 재평가액에 의한 總資產額 평가는

$$G = P \times \frac{1}{\text{잔가율}} \times R \text{의 산식에 의하였다.}$$

여기서 P는 중고품 取得價格(또는 재평가액), 잔가율은 신품으로부터 중고품취득시(또는 재평가시)까지의 잔가율, R은 중고품 취득후 조사기준시점까지의 물가배율임.

##### < 問題點 >

중고품자산 및 재평가액에 의하여 總資產額을 산출하는 상기산식은 이론상 맞지는 않지만 중고품구입시(재평가시) 取得價格(재평가액) P는 거의

시장가격으로서 실제 중고품의 감가상각분을 충실히 반영한 반면, 현행 법인세법에 의한 잔가율은 정율법에 따른 것으로서 현실보다 작으며 이에 따라 그 역수인 잔가율은 크게 되어 실제의 總資産額 (재취득가격 = 신품가격) 보다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

<개선방안>

이와같은 평가상의 문제는 상기산식을 이용하는 한 피할 수 없으므로 중고품과 재평가액에 의한 평가를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최초의 취득원가에 의한 평가, 건물의 경우 建物評價基準表에 의한 평가, 신품가격에 의한 평가등을 이용, 總資産額이 과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IV. 法 人 資 産

韓國産業銀行 課長 이 재 덕

### 1. 調查概要

#### 가. 調查對象客體의 範圍

調查對象客體는 國內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政府와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非營利團體, 政府管理企業, 法人,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一般家口 등이다. 當行이 擔當한 法人部門은 크게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그 內容은 〈표 1〉과 같다.

〈표 1〉 法人의 種類

法 人 區 分		根 據 法	資 料 蒐 集 處
營 利 法 人	株 式 會 社 合 資 會 社 有 限 會 社 合 名 會 社	商 法 171條	法 院 國 稅 廳
非 營 利 法 人	社 團 法 人 財 團 法 人 特 別 法 人	民 法 32條 特 別 法	法 院 認 許 可 部 處

#### 나. 調查對象資産의 範圍

調查對象資産은 天然資源과 無形資産, 그리고 防衛目的에 使用되는 資産등

을 除外한 再生産可能한 有形固定資産, 在庫資産 및 對外純資産으로 < 표 2 > 와 같다.

< 표 2 > 調查對象資産의 分類

大 分 類	中 分 類	小 分 類
有形固定資産	建築物 機械裝置 船舶 車輛運搬具 工具와器具備品 建設假計定 大動植物 家財	住居用建物 非住居用建物 建物附屬設備 交通施設 發電 및 送配電施設 水利·治水 및 給水施設 其他施設 鋼船 木船 其他船舶 軌道車輛 自動車 航空機 其他車輛運搬具 工具와器具備品 動植物 動植物
在庫資産	商品 및 製品 半製品 및 在工品 原材 貯藏品 其他	
對外純資産		

다. 評價方法

각 經濟主體가 所有하고 있는 有形固定資産에 대하여서는 取得年度와 取得價額을, 在庫資産은 帳簿價額을 調査한 후 總資産額과 純資産額을 算出한다. 資産別 評價方法은 〈표 3〉과 같다.

〈표 3〉 國富資産 評價方法

區 分		總 資 産 額 (G)	純 資 産 額 (N)
有形 固定 資産	新 品	取得價額×物價倍率	總資産額× 殘價率
	中 古 品	取得價額×物價倍率 ----- 經過年數 (1)에 따른 殘價率	
在庫資産		帳 簿 價 額	帳簿價額

註 1) 經過年數란 該當資産의 中古品取得年度에서 新品製造年度를 뺀 年數이다.

라. 法人資産規模

(單位: 10 億원, %)

	總 資 産 額		增加率 (%)	構 成 比	
	1977	1987		1977	1987
(A) 國富總額	62,744	539,882	8.6	100.0	100.0
(B) 法人資産	17,101	231,524	13.5	27.3	42.9
有形固定資産	14,598	197,208	13.5	(85.4)	(85.2)
在 庫 資 産	2,504	34,315	13.7	(14.6)	(14.8)
B / A (%)	27.3	42.9	-	-	-

## 2. 現況 및 問題點

### 가. 分類體系

#### (1) 現況

- 資產分類 - 稅法의 資產分類 準用
- 産業分類 - 韓國標準産業分類 適用
- 調査客體의 分類 -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
- 其他分類 - 地域, 取得年度, 資本金規模, 從業員規模

#### (2) 問題點 및 改善方案

##### 가. 資產分類

— 工器具, 備品の 資產分類가 너무 細分化되어 調査表作成에 애로가 많았음. 따라서 이 部門의 資產分類를 단순화하는 것이 必要함

##### ○ 調査客體의 分類

— SNA分類와 支部별 調査客體의 分類가 일치하지 않아 집계시 애로가 많았음. 支部별 調査對象의 區分을 SNA分類에 따르는 것이 必要함

##### 나. 中古資產 및 再評價資產의 評價方法

#### (1) 現況

— 原則: 總資產額 = 取得價額 × 物價倍率

$$\text{純資產額} = \text{總資產額} \times \text{減價償却率}$$

— 中古資產 또는 再評價資產의 경우

$$\text{總資產額} = \text{取得價額} \times \frac{1}{\text{제조시점이후의 감가상각율}} \times \text{物價倍率}$$

$$\text{純資產額} = \text{總資產額} \times \text{減價償却率}$$

## (2) 問題點 및 改善方案

○ 有形固定資産中 中古資産 및 再評價資産의 評價時 資産形態에 따라 환산된 總資産額, 純資産額의 가치가 新品取得資産의 評價額과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 部門의 실증적 檢討가 必要함

### 다. 試驗調查

#### (1) 概要

##### (가) 目的

아래와 같은 調查上의 제반 問題點을 把握하여 本 調查의 企劃과 設計에 必要한 資料를 蒐集하고자 하였음

- 調査項目 및 調査票 設計의 타당성 檢討
- 資産分類 및 耐用年數票등 제 評價基準票의 타당성 檢討
- 標本設計方法의 檢討
- 調査對象法人의 所在確認등

##### (나) 調査基準日

1986年12月31日 現在를 基準으로 作成하였음

##### (다) 實查期間

1987.9.23 - 10.31 ( 39 일간 )

##### (라) 調査對象

調査基準日 現在로 國內에 所在하는 약 50,000 個의 法人중 産業小分類別( 54 개층 ), 從業員 規模別( 8 개층 ) 特性을 감안하여 추출한 966 개 法人과 그 管轄 事業體

##### (마) 實查現況

966 개 최초 調査對象法人중 移轉, 所在不明등의 사유로 調査進行中 除外



된 法人이 75 개이고 최종 調査對象法人은 891 개이며 이중 788 개 法人이 回收되어 88.4 %의 回收率을 보였음

(2) 試驗調査에서 檢討된 問題點 및 改善方案

(가) “ 資産分類 및 耐用年數票 ”

○ 現況 및 問題點

－ 모든 營利法人의 所有資産에 대한 資産分類 및 내용년수의 適用은 稅法을 基準으로 하고 있으나, 금번 國富調査의 “ 資産分類 및 내용년수표 ”는 한국감정원의 資産分類 및 내용년수를 適用하였다.

－ 現行 “ 資産分類 및 내용년수표 ”상의 資産分類가 너무 細分화되어 있어, 所有資産의 種類와 品目이 다양한 大規模 營利法人의 경우 모든 資産을 본 調査體系로 再分類하여야 함으로 調査表 作成이 現實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였다.

－ 中小規模 企業의 경우에도 제한된 소수 인원으로 자사소유의 모든 資産을 現행 體系에 맞추어 品目別 取得年度別로 재분류하여 조사표를 作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우며, 정확한 기재내용을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렵다.

－ 現행 資産分類表上 일부자산이 企業會計基準上 資産分類와 다르게 分類되어 있어 조사표 作成에 혼란이 야기되었다.

－ 現행 機械裝置에 대한 資産分類表上 名稱이 企業이 사용중인 名稱과 서로 상이하여, 機械裝置의 名稱 및 용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사표 作成擔當者( 주로 회계담당자 )로서는 이의 區分이 어려워 作成에 애로가 많았다.

－ 現행 “ 資産分類表 ”에 企業이 所有하고 있는 高價의 특수有

形固定資産에 대한 分類가 없는 경우가 있어 적합한 分類項目 適用이 어려워 資産額 評價의 問題가 야기되었다.(특히 광공업 資産에 대한 資産分類가 현실과 상이한 部分이 많았다)

○ 改善方案

— 資産管理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法人의 경우에도 동 改正案을 利用하면 내용년수가 동일한 설비에 대해 總括記入이 可能하므로 所有資産 品目數가 아주 많다 하더라도 調査表를 상당히 간편하게 作成할 수 있다.

— 稅法基準의 資産分類 改正案으로 해결될 수 있다.

— 國富調査의 目的이 우리나라 資産規模를 把握하는데 있으므로 所有資産의 비중이 큰 大規模 企業部門에서의 精確한 資料蒐集을 위하여 現行 法人稅法 施行規則에 제정되어 있는 “資産分類 및 내용년수표”를 基準으로 하여 現行 體系를 전면 改正하여 본 조사시에 適用토록 한다.

— 우리나라 모든 企業이 稅法을 基準으로 資産管理를 하고 있어 稅法上 내용년수를 適用하면 모든 營利法人의 調査表 作成이 훨씬 용이하게 된다.

— 資産管理가 전산화되어 있는 일부 大規模 營利法人의 경우에도 동 改正案을 利用하여 모든 所有資産을 내용년수별, 取得年度別 取得價額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開發한다면 본 調査에 必要한 모든 資料가 용이하게 處理될 수 있다.

(나) 再評價資産의 評價

○ 現況 및 問題點

— 기업역사가 오래된 대다수 企業들은 自社保有 資産의 積정평

가를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資産再評價를 실시한 경우가 많다.

－ 資産再評價를 실시한 대다수의 企業에서는 再評價額 자체를 取得原價로 設定, 運用하고 있어 그 資産에 대한 원시 取得價額 추적이 아주 어려웠다.

－ 특히 모든 資産管理가 전산화되어 있는 大規模 企業의 경우 資産再評價額 자체가 取得原價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資産別 당초 取得原價 把握이 현실적으로 거의 不可能하였다.

○ 改善方案

－ 營利法人의 再評價資産에 대한 評價體系를 開發하여, 이를 適用하면 諸 問題點은 해결될 수 있다.

－ 再評價 實施 후에도 당초 取得原價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現行 體系基準으로 評價함을 原則으로 한다.

－ 資産再評價후 당초 取得原價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資産再評價額 자체를 中古資産 取得價額으로 의제하여 評價토록 한다. 즉 資産再評價日을 中古자산 取得時期로, 내용년수는 再評價后 變更된 내용년수를 適用하여 評價토록 한다.

(다) 中古取得資産의 評價

○ 現況 및 問題點

－ 大部分의 企業이 資産管理에 있어 品目別로 新品, 中古品の 區分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 조사표 작성담당자가 이를 區分 기재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였다.

－ 銀行이 保有하고 있는 유입자산에 대한 處理基準이 없어 資産評價가 곤란하였다.

○ 改善方案

－ 調査對象法人의 所有資産에 適用하고 있는 내용년수가 稅法에 規定된 당초 내용년수와 상이한 資産은 再評價資産이거나 中古取得資産이므로, 이들 모두를 中古資産으로 區分 表示하여 調査토록 한다.

－ 中古取得資産 處理基準에 의하여 資産額을 評價토록 한다.

(라) 非營利資産 調査上的 問題點

○ 現況 및 問題點

－ 大部分 設立( 주로 50年代 設立) 후 오랜기간이 경과되어 所有資産에 대한 帳簿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 帳簿上 기재된 所有資産 대부분이 그 種類와 數量만 기재되어 있어, 모든 資産이 取得價額, 取得時期 불명자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 大部分 本조사 內容 및 調査方法에 대한 조사표 작성자의 이해도가 낮아서 調査表 기입이 正確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改善方案

－ 자료미비 非營利法人의 所有資産 調査는 개인자산 지부의 調査方法을 援용하여 조사원을 통한 단계식 調査로써 해결한다.

－ 所有資産에 대한 帳簿가 비치된 非營利法人의 경우에는 조사원을 통한 조사표 작성자 敎育을 철저히 하여 단계식 調査가 可能하도록 유도한다.

라. 標本設計

(1) 概 要

(가) 母集團

本 調查의 母集團은 調查基準時點 ( 1987 年 12 月 31 日 ) 現在 우리나라에 存  
在하는 모든 國內法人으로 總 43,151 個 法人이 包含되었다.

(나) 層 化

먼저 母集團을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으로 區分하고 營利法人은 다시 產  
業小分類別로, 非營利法人은 學校法人, 醫療法人, 社會福祉法人, 其他 非營利法  
人등으로 區分한 후 이를 規模와 地域에 따라 層化하였다.

段階別 層化의 基準

母 集 團	層 化			
	1 次	2 次	3 次	4 次
'87 年 末 現 在 國內 法人	營利法人	産業小分類 ( 89 個 )	一定規模 以 上과 그 未滿	14 個 地域
	非營利法人	學校法人, 醫 療法人, 社會 福祉法人, 其 他非營利法人	一定規模 以 上과 그 未滿	14 個 地域

規模別 層化의 內容

區 分	2 次層化基準	3 次層化 ( 規模 )	
		第 1 層 ( 上位規模 )	第 2 層 ( 下位規模 )
營 利 法 人	産業分類 521,527,611, 711,830,920	國稅廳申告 B/S 上의 國 富對象資産總計 上位 50 % 法人	下位 50 % 法人
	其他의 産業分類	上同 上位 80 % 法人	下位 20 % 法人
非營利法人	學校法人	學校數 3 個校以上 法人 또는 大學法人	其他의 法人
	醫療法人	病床數 200 個以上 法人	其他의 法人
	社會福祉法人	受容人員 200 人以上 法人	其他의 法人

(다) 抽出單位와 틀 (frame)

法人을 抽出單位로 하였으며, 抽出單位의 틀 (frame)로는 營利法人의 경  
우 國稅廳 法人名簿를, 非營利法人의 경우에는 政府各部處別 法人名簿를 使  
用하였다.

(라) 標本數 決定

2 次層化 ( 産業小分類 또는 非營利特性 ) 副母集團의 推定값은 5 %의 許  
容誤差範圍內에서 95 % ( 一部 90 % )의 信賴水準을 갖도록 하였으며 3 次  
層化 ( 規模 ) 副母集團內의 標本數는 먼저 第 1 層 ( 上位規模 )은 全數調查를  
第 2 層 ( 下位規模 )에 대하여서는 許容誤差와 信賴水準의 條件下에서 4 次層  
化 ( 地域 ) 副母集團別 最適配分法을 使用하여 決定하였다.

各層別 標本數 決定基準

區 分	2 次 層 化	許容誤差	信賴水準
營 利 法 人	産業分類 511,512,521,523,527,611,613, 711,719,830,920	10 %	90 %
	其他의 産業分類	5 %	95 %
非營利法人	學校法人, 醫療法人, 社會福祉法人	5 %	95 %

標本抽出結果 法人數

區 分	母集團法人數	調査對象法人數		
		全數調査	標本調査	
營 利 法 人	1. 農林漁業	271	45	72
	2. 鑛 業	274	43	64
	3. 製造業	14,085	980	1,714
	4. 電氣·「가스」·水道業	40	9	26
	5. 建設業	5,977	380	670
	6. 都·小賣·飲食·宿泊業	8,991	257	622
	7. 運輸·倉庫·通信業	5,219	186	308
	8. 金融·保險·不動産·用役業	3,413	220	512
	9.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1,390	163	232
非 營 利 法 人		3,491	868	624
計		43,151	3,151	4,844

(마) 標本抽出

標本抽出은 4次層化(地域) 副母集團別로 系統抽出法에 依하였다.

(리) 推 定

調査結果에 依한 推定式은 다음과 같다.

$$X_T = \sum_s X_s$$

$$X_s = \sum_i \sum_j \frac{N_{ij}}{n_{ij}} \sum_k X_{ijk}$$

X : 法人의 資産額

N : 母集團法人數

n : 標本法人數

T : 法人全體

S : 産業小分類 또는 非營利特性(2次層化基準)

i : 法人規模의 層(3次層化基準)

j : 法人地域의 層(4次層化基準)

k : 標本法人의 法人番號

(2) 問題點 및 改善方案

(가) 標本設計機關

○ 問題點 - 標本設計를 6個機關이 分擔함으로써 標本設計의 條件과 基準이 통일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6個機關의 調査結果가 통합된 綜合報告書의 결과치에 대하여서는 許容誤差와 信賴度라는 통계적 條件을 提供할 수 없다는 問題가 있다.

○ 改善方案 - 標本設計의 基準과 條件을 통일시키고 綜合結果의 통계적 條件을 提供할 수 있도록 한 機關에서 一括的인 標本設計 全擔이 必要



(나) 母集團特性値의 不在

○ 問題點 - 標本設計에 必要한 母集團의 資産特性値가 不在하여 標本設計에 제약이 많음. 특히 非營利法人의 경우에는 資産에 對應되는 特性値를 蒐集하기 어려움

○ 改善方案 - 기초통계의 보다 廣範圍하고 세밀한 提供이 必要

(다) 結果値 製表

○ 問題點 - 調查結果의 집계는 産業別, 地域別分類 以外에도 資本金規模別, 從業員規模別, 資産額規模別등의 製表도 包含한다. 따라서 産業과 地域만을 考慮한 標本設計로서는 그와 같은 製表들의 推定값에 대한 통계적 의미를 說明할 수 없다.

○ 改善方案 - 각 分類의 母集團 分布資料로 活用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이 必要

## V. 個人企業資產 調查部門

國民銀行 課長 李 虎 植

### 1. 調查概要

#### 가. 調查概觀

－ 調查對象 事業體數의 過多로 인하여 3 個機關이 産業別로 分擔하여 調查實施

調 查 機 關 名	分 擔 內 容
－ 農 林 水 産 部	農林漁業部門
－ 中 小 企 業 銀 行	鑛業~都小買 및 飲食宿泊業
－ 國 民 銀 行	運輸·倉庫 및 通信業~社會 및 개인 서비스업

#### 나. 母集團 및 調查對象 事業體數

區 分	調查方法	母 集 團 數	標 本 事 業 體 數
－ 農林漁業	면접타계식	약 200 만 業體	약 31,000 개 業體
－ 鑛業~都小賣 및 飲食宿泊業	"	약 130 만 業體	약 14,000 개 業體
－ 運輸·倉庫 및 通信業 ~社會 및 개인서비스업	"	약 80 만 業體	약 15,000 개 業體
計		약 410 만 業體	약 60,000 개 業體

#### 다. 調查對象 資產의 範圍 및 評價方法

－ 政府 및 法人資產 部門과 동일

## 2. 調査結果

가. 1977년 對比 個人事業體의 資産總額 比較

— '77年 對比 6.5 배 增加

(單位：10 億원, %)

區 分	總 資 産 額		增加率(倍)	構 成 比	
	'77年	'87年		'77年	'87年
個人企業資産	12,670	82,229	6.5	100.0	100.0
- 農 林 漁 業	3,443	24,633	7.2	27.2	29.9
- 非農林漁業	9,227	57,596	6.2	72.8	70.1

— 農林漁業은 全體의 29.9%, 非農林漁業은 70.1%占有

## 3. 問題點 및 改善方案

가. 母集團

○ 現 況

— 國稅廳 과세자료 利用

○ 問題點

— 國稅廳 M/F 상 産業分類, 주소코드, 從業員數등의 事業體 特性值 미수록

— 非營利 團體등에 資料가 없음

○ 改善方案

— 經濟企劃院의 總事業體 調査를 國富統計調査 實施 前年度에 實施 하고 同 資料를 母集團으로 活用

－ 內務部, 文敎部等 關聯機關이 把握하고 있는 非營利團體 名簿등을 積極 活用

나. 標本設計

○ 現 況

－ 3 個 調查機關別로 産業別로 標本設計

○ 問題點

－ 標本設計의 劃一性 缺如

－ 標本設計上의 기법 상이

○ 改善方案

－ 동일 母集團의 活用으로 標本設計의 통일화 유도

다. 試驗調查

○ 現 況

－ 2 차에 걸친 試驗調查 實施

○ 問題點

－ 國富統計 調査에 대한 關心度, 應答度, 장부비치 정도등을 조사하였으나 關心度중 찬성은 10 %, 應答度중 좋았음 32 %, 장부비치 정도는 67 %로 調査上의 애로사항이 많음

○ 改善方案

－ 國富統計調査 實施前 大국민 홍보 실시

라. 本調査

○ 現 況

－ 本調査 實施에 따른 問題點 發生

- 問題點
  - 家計와 企業이 혼용하고 있는 建物에 대한 面積算出이 어려움.
- 改善方案
  - 全體 面積에서 家計使用分 除外
- 問題點
  - 個人企業의 特性上 무기장 業體가 많아 기억에 의한 應答이 많음.
- 改善方案
  - 業種別 資産에 대한 check list 를 調査員에게 주지시켜 이에 의하여 漏落資産을 最少化시킴.
  - 調査員에 대하여 요약 재무제표 作成方法을 敎育
- 問題點
  - 外貨로 取得한 資産에 대한 원화환산 곤란
- 改善方案
  - 일단 取得當時의 外貨를 記載한 후 審査時 원화로 환산
- 問題點
  - 事業體 양수도 契約에 의거 資産을一括 取扱時 資産別 取得價額 算出 困難
- 改善方案
  - 資産別 新品價格 및 中古品價額을 別途로 調査하여 同資料를 利用하여 區分把握
- 問題點
  - 아파트 管理事務所의 所有資産 範圍의 불분명
- 改善方案

- 아파트의 同施設 및 부대시설 등은 管理事務所 資産에 包含시켜 把握

○ 問題點

- 調査基準時點과 實際調査時點間의 시차가 길어 무기장 業體인 경우 財庫資産 把握의 困難

○ 改善方案

- 調査基準時點과 實際調査時點間 시차의 最少化

○ 問題點

- 調査對象業體의 休閉業 移轉등 유고업체가 많음.

○ 改善方案

- 유고업체 發生率 등을 감안 예비표본을 다수 確保

○ 問題點

- 都小賣의 경우 資産露出을 우려 특히 在庫資産 縮小 應答등 기피현상이 다소 發生

○ 改善方案

- 調査에 대한 充分한 弘報 實施

○ 問題點

- 개인택시, 용달 事業體등에 대한 事業主 면담기회가 없음.

○ 改善方案

- 各 市道 組合등을 통해 間接 추계조사 : 車種, 形式, 年度別

○ 問題點

- 賃借資産, 中古資産 등의 取得年度, 取得價額 把握 困難

○ 改善方案

-賃借建物 등은 建築物 管理臺帳, 機械裝置 등을 形式, 生産年度 등을 감안하여 取得價額 추계

○ 問題點

- 建物 改・補修 등 資本的 支出이 있는 資産에 대한 再評價의 困難

○ 改善方案

- 建物 新築單價表(韓國鑑定院) 등을 利用하여 再評價하여 調査

○ 問題點

- 建物과 構築物 등이 同時に 造成됨으로써 區分 把握 困難

○ 改善方案

- 上 同

○ 問題點

- 1個業體가 2個以上の 業種을 영위할 경우 該當業種別 資産 分類가 困難

○ 改善方案

- 賣出額이 많은 業種으로 再分類하여 調査

마. 調査實施에 대한 홍보

○ 現 況

- 日刊紙 및 TV 홍보 실시

○ 問題點

- 1회의 日刊紙 실시 公高문 게재 및 TV자막 홍보실시로 홍보 부족에 따른 參與度 缺如

○ 改善方案

- 調査實施前 각종 마스크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調査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바. 評價 및 結果表 作成

○ 現 況

- 각 지부별로 評價 및 結果表 作成

○ 問題點

- 각 지부별 評價 및 전산프로그램 開發로 調査結果 종합시 시간 낭비요소가 많음

- 調査結果表의 각 지부별 作成후 종합편 作成 및 分析으로 시간 낭비 요소가 많음

○ 改善方案

- 전산요원의 合同教育 실시 및 공동 프로그램 開發

- 調査結果表 공동작성